#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(강은미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7020

발의연월일: 2020. 12. 29.

발 의 자: 강은미·류호정·박홍근

배진교 · 심상정 · 용혜인

이규민 · 이은주 · 장혜영

조오섭 의원(10인)

####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최근 미관 중심의 투명방음벽, 건축물 투명창 등이 증가함에 따라 인공구조물로 인한 조류의 충돌 피해가 증가하고 있음. 환경부 연구 결과(인공구조물에 의한 야생조류 폐사방지 대책수립 연구, '17.11~'1 8.10)에 따르면 연간 투명창 충돌로 인해 폐사하는 조류는 800만 마리 에 달함.

고라니, 너구리 등 포유류가 콘크리트 농수로에 추락해 폐사되는 숫자도 연간 최소 6만 마리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됨(야생동물 폐사 등 농수로의 생태적 위해성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, '18.12~'19.6).

그러나 현행법상 이와 관련한 피해방지 조항이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아 인공구조물로 인한 야생동물 피해 저감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.

이에 정부나 공공기관이 앞장서 인공구조물 충돌ㆍ추락으로 인한

야생동물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인공구조물을 설치·관리토록 하여 인공구조물로 인한 야생동물의 피해를 최소화하려는 것임(안 제8 조의2 신설).

#### 법률 제 호

###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8조의2(인공구조물로 인한 야생동물의 피해방지) ① 국가, 지방자치 단체 및 「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공공기관(이하 "공공기관"이라 한다)은 인공구조물로 인한 야생동물의 충돌·추락 으로 부상·폐사 등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소관 인공구조물 을 설치·관리(이하 "피해방지조치"라 한다)하여야 한다.

- ② 환경부장관은 인공구조물로 인한 야생동물의 피해가 심각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,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공 공기관의 장에게 해당 인공구조물이나 관련 제도의 개선을 요청할 수 있으며,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 다.
- ③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피해방지조치를 이행하는 자에게 필요하면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.
- ④ 제1항에 따른 인공구조물의 범위 및 설치기준 등 그 밖에 필요 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.

## 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제2조(인공구조물로 인한 야생동물 피해방지조치에 관한 경과조치) 이 법 시행 이전에 설치된 인공구조물의 경우 이 법 시행일부터 3년 이내에 피해방지조치를 이행하여야 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u>&lt;신 설&gt;</u>	제8조의2(인공구조물로 인한 야생
	동물의 피해방지) ① 국가, 지방
	자치단체 및 「공공기관의 운영
	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공공기
	관(이하 "공공기관"이라 한다)
	은 인공구조물로 인한 야생동물
	의 충돌・추락으로 부상・폐사
	등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
	록 소관 인공구조물을 설치・관
	리(이하 "피해방지조치"라 한
	다)하여야 한다.
	② 환경부장관은 인공구조물로
	인한 야생동물의 피해가 심각하
	다로 인정하는 경우 관계 중앙
	행정기관의 장, 지방자치단체의
	장 또는 공공기관의 장에게 해
	당 인공구조물이나 관련 제도의
	개선을 요청할 수 있으며, 요청
	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
	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.
	③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
	피해방지조치를 이행하는 자에
	게 필요하면 그 비용의 전부 또
	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.

④ 제1항에 따른 인공구조물의
 범위 및 설치기준 등 그 밖에
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.